

일련번호

기부금영수증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기부자

성명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주소	null null		

● 기부금 단체

단체명	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101-82-05814
소재지	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406호	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	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 목

기부금 모집처(언론기관 등)

단체명		사업자등록번호	
소재지			

기부내용

유형	코드	구분	년월	내용	금액
현금	40	금전		후원금	0

「소득세법」 제34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, 제76조 및 제88조의 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06월 20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.

기부금 수령인

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

작성방법

- "2. 기부금 단체"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. (예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2호 나목,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1항제1호)
다만,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경우에는 기부금단체 지정 공고번호 및 기부금 인정기한을 기재합니다. [예,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-249호(2014. 12. 13)]
- "3. 기부금 모집처(언론기관 등)"는 방송사, 신문사,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
- "4. 기부내용"란에 적는 유형·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: 법정, 코드 10
 - 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: 정치자금, 코드 20
 - 다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제1항(제1호 및 제11호 제외)에 따른 기부금 : 조특법 73, 코드 30 (2011.6.30 이전까지 지출한 경우)
 - 라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신탁기부금 : 조특법 73 ① 11, 코드 31 (2011.6.30 이전까지 지출한 경우)
 - 마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(종교단체 기부금 제외)에 따른 기부금 : 지정, 코드 40
 - 바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: 종교단체 코드 41
 - 사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: 우리사주, 코드 42
 - 아.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: 공제제외, 코드 50
4. 구분란에는 "금전기부"의 경우에는 "금전", "현물기부"의 경우에는 "현물"로 적습니다.